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종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870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4.

발 의 자:윤종군・김주영・홍기원

김병기 • 박홍배 • 정성호

손명수 · 정준호 · 소병훈

맹성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3년 2월, 정부는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"안심전세 앱"을 출시하였음.

그런데 임차인이 "안심전세 앱"을 통해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이나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사고 위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면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임대인의 미협조 시에는 확인이 불가능하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등 보증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, 전세사기를 예방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 34조의6 신설).

법률 제 호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에 제3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의6(보증정보등 제공) ① 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임차인(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)이 임대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(이하 이 조에서 "보증정보등"이라 한다)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증정보등을 제공할 수있다.

- 1.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과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제2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말한다) 가입 건수
- 2.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
- 3. 임대인이 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 이행 여부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보증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및 제공사실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34조의6(보증정보등 제공) ①
	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임차
	인(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
	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
	한다)이 임대인과 관련된 다음
	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(이하
	이 조에서 "보증정보등"이라
	한다)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
	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
	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에도
	불구하고 보증정보등을 제공할
	<u>수 있다.</u>
	1.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과 관
	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제2
	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
	증금반환보증을 말한다) 가입
	<u>건수</u>
	2.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및
	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
	3. 임대인이 공사에 대하여 부
	담하는 구상채무의 존재 및
	이행 여부
	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
<u>는 사항</u>

-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 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 보증 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 증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제공 및 제공 사실 통보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